

증평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

2003. 12. 15
[규칙 제22호]

개정 2007. 12. 21 규칙 제132호
일부개정 2013. 2. 22 규칙 제214호
일부개정 2019. 12. 26 규칙 제372호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증평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2. 21, 2013. 2. 22>

제2조(책임완수)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근무기강 확립)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.

제4조(근무시간)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.

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.

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비상근무)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22>

제6조(복제)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4조를 따른다. <개정 2007. 12. 21, 2013. 2. 22, 2019. 12. 26>

제7조(휴가)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「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07. 12. 21, 2013. 2. 22, 2019. 12. 26>

제8조(근무시간의 계산) 봉급 산정기준에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. <개정 2013. 2. 22>

제9조(다른 규정의 적용)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

증평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

「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따른다. 〈개정 2007. 12. 21, 2013. 2. 22, 2019. 12. 26〉

[제목개정 2019. 12. 26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12. 21 규칙 제13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2. 22 규칙 제214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규칙 제372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
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